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2021. 2. 18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2. 5. 김진홍 의원 등 11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2. 18.)  
“ 수정가결 ”

## 2. 제안이유( 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 )

-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·관리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 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## 5. 검토보고 요지( 전문위원 : 이상원 )

- 본 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(의안의 발의)에 따라 김진홍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문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실제 대한민국 국화(國花)로 명문화된 법령은 없는 상태로 국가기관의 기(旗), 훈장(勳章),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배지 등에 사용되고 있음  
이에, 본 제정안은 역사적·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안되었음
- 안 제2조(정의)제2호에서는 “무궁화 진흥”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·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강남구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음
- 안 제4조(무궁화 진흥 사업)는 구청장이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로 규정한 바, 각 호 사업별(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, 무궁화 묘목 식재, 관련 문화행사,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사업, 관련 콘텐츠 개발 등) 구체적(구 현황, 향후 계획, 소요예산 등) 설명과 함께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1)과 연계 설명도 요구됨

1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(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·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·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안 제5조(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)는 구청장이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안 제6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에는 구청장이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, 해당 법인 및 단체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- 안 제7조(표창)는 구청장이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이에, 본 조례 제정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·관리하는 근거 마련과,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<sup>2)</sup> 등을 비추어보면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,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 
또한,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는 각 사업별(무궁화 동산 및 거리조성,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, 교육 및 홍보, 표창 등) 내용이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, 이를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무궁화 보급·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무궁화 보급·관리 현황 및 계획
3. 무궁화 품종 보존·연구 및 개발
4. 무궁화 생산기반

5.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 
6. 그 밖에 무궁화 보급·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2) 조례제정현황(2021년 1월 현재) :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, 중랑구 등 2개구, 경기도, 경상북도 등 광역자치단체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 의 : 안 제4조 무궁화 진흥 사업에서 무궁화 동산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?
- 답 변 : 무궁화는 양수이자 관목으로써 해가 잘 드는 곳에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 식재 공간이 한정되고 진딧물에 취약해 사실상 공원 같은 곳에 선택적으로 식재할 수 밖에 없음. 우리구는 2015년, 2016년에 무궁화길과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고, 구청사와 보건소 등에 약 6,200여주 정도의 무궁화를 식재하였음
- 질 의 :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식재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
- 답 변 : 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무궁화 수목의 특성때문에 확대 보급이 어려운 편이지만, 최대한 좋은 품종을 선정해서 무궁화의 문화적·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음
- 질 의 : 무궁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
- 답 변 : 공모사업으로 추진 하거나, 자체적으로 장소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겠음

## 7. 토론 요지

- 토론과정 중, 이재민 의원으로부터 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”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

## 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 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

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--------

제366호
-------

발의일자 : 2021. 2. 18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”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” 적용(안 제6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사업을 수행하는”을 “사업을 추진하는”으로 한다.안

제3조 본문 중 “순위”를 “책임 순위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</p> <p>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<u>사업을 수행하는</u>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</p> <p>① -----            --- <u>사업을 추진하는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


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 
(김진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2. 5.

발 의 자 : 김진홍·김세준·이향숙·  
문백한·안지연·이상애·  
복진경·최남일·이재민·  
박다미·김형대(이상11  
인)

### 1. 제안이유

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매김 하였는바,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·관리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- 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역사적·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무궁화”란 식물분류학적 분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무궁화 진흥”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·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무궁화 진흥 사업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·관리

2.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, 나눔 활동

3. 무궁화 보급·확산을 위한 문화행사

4. 공공청사,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

5.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사업

6.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게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표창)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**제35조의5(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·관리)**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.

**제35조의6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·관리·연구·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